

국제 ODA 동향

(2009. 8)

본 자료는 선진국의 ODA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되었습니다.

ODA 토픽

- | | [Page] |
|--|--------|
| <input type="checkbox"/> DAC가입심사 수검결과 및 시사점 | [2] |
| ◆ OECD DAC의 '09. 6월 우리나라 주요 원조정책·실행기관 방문 심사 실시 내용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Aid for Trade'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10] |
| ◆ 다자무역협상과정에서 도입된 'Aid for Trade'의 개념, 수원 및 공여 동기, 시사점 정리 | |

ODA 단신

- | | |
|---|------|
| <input type="checkbox"/> OECD DAC 제 47회 고위급회의(HLM) 주요 내용 | [24] |
| ◆ 경제위기하 ODA 규모 확대 등 DAC 주요 현안을 논의한 '09년 고위급회의 주요 내용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OECD DAC 제 60차 통계작업반회의 주요 내용 | [30] |
| ◆ ODA 통계수집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통계작업반의 '09년 공식회의 주요 내용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ODA 통계담당자 대상 통계설명회 주요 내용 | [36] |
| ◆ 우리나라 ODA 통계 수집 관련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통계설명회의 주요 내용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연계에 관한 정책지침서의 주요내용 | [39] |
| ◆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 및 개발협력 과정에의 연계를 위한 OECD DAC의 정책지침서 주요 내용 정리 | |

ODA 자료

- | | |
|--|------|
| <input type="checkbox"/> 세계은행 및 OECD의 2009년도 국가분류 현황 | [42] |
| ◆ '09년 7월부터 적용되는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 현황 조사 | |

EDCF 소식

- | | |
|--|------|
| <input type="checkbox"/> 2009년 2/4분기 EDCF 소식 | [47] |
| ◆ '09년 2/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09년 6월 말 현재 EDCF 업무통계 | |

ODA 토픽 1

DAC가입심사 수검결과 및 시사점

【요 약】

- 우리나라의 OECD/DAC가입신청('09.1)과 관련, 가입심사절차의 일환으로 DAC 실사단이 방한, '09.6.22~24기간 중 우리나라 주요 원조정책·실행기관을 방문하여 심사 실시
- 실사기간 중 실사단이 제시한 심사사항과 우리측 답변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peer pressure의 향방을 예측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DAC 가입승인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함

1. DAC가입심사 개요

가. 우리나라의 DAC가입심사 수검 경위

- '05.11.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국무회의)' 채택시 2010년 전후를 DAC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
- '06. 9. OECD가입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DAC 가입 조속 추진 의사 표명
- '07. 7.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DAC가입 로드맵' 마련
- '08. 3. DAC Special Review 수검
- '08. 8.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10년 DAC 가입추진 확정
- '09. 1. 외교부장관, OECD앞 가입요청 서한 발송
- '09. 5. 우리정부, Memorandum 작성·송부
- '09. 6. 6.22~24일간 DAC실사단, 주요기관 방문·실사

나. 주요 심사 의제별 우리측 답변 요지

금번 DAC의 가입심사는 정책적 권고 제시를 중심으로 했던 '08년 Special Review와는 달리 심사항목별 우리나라의 현황 파악에 주력하였는 바, 가입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심사의제별 우리측이 설명한 사실(Fact) 중심으로 요약

□ 원조전략, 정책 및 체계

- ODA기본법 제정 관련, 5개 법안이 소관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관련부처간 의결조율 진행 중
-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ODA목표, ODA확대계획, 중점원조방향, 원조 선진화계획 등을 포괄하는 ODA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 무상·유상원조 중점협력국을 30개국 이내로 단일화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예정
- 원조 기관간 조율, 협력강화를 위해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 예정

□ 원조규모 확대 계획

- '15년 ODA/GNI 비율 0.25% 달성을 목표로 한 우리정부의 ODA 확대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추진 의지 진단
 - DAC실사단이 요구하는 연도별 이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15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범정부적 노력 경주

□ 원조효과(원조의 비구속화 포함) 제고 노력

-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계획 마련('15년까지 전체 양자원조에 대해서는 75%, 최빈국 및 HIPC에 대해서는 90% 이상)
- EDCF의 경우, **MDB 협조용자 확대 및 최빈국에 대한 우선적인 비구속성 원조 확대** 계획
- KOICA는 온라인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5년까지 모든 원조를 비구속화할 예정
- 우리 중소기업과 컨설팅 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원조의 비구속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타 원조효과 제고 이행 사례 제시
 -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등 원조효과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원조효과 관련 시범사업(Pilot Country Project) 추진**
 - EDCF, 베트남 '6 Bank Initiative'를 통한 공여국간 원조조화 추구
 -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를 위한 EDCF의 Framework Arrangement 운영현황 및 무상원조의 다년도 원조배분계획 수립 예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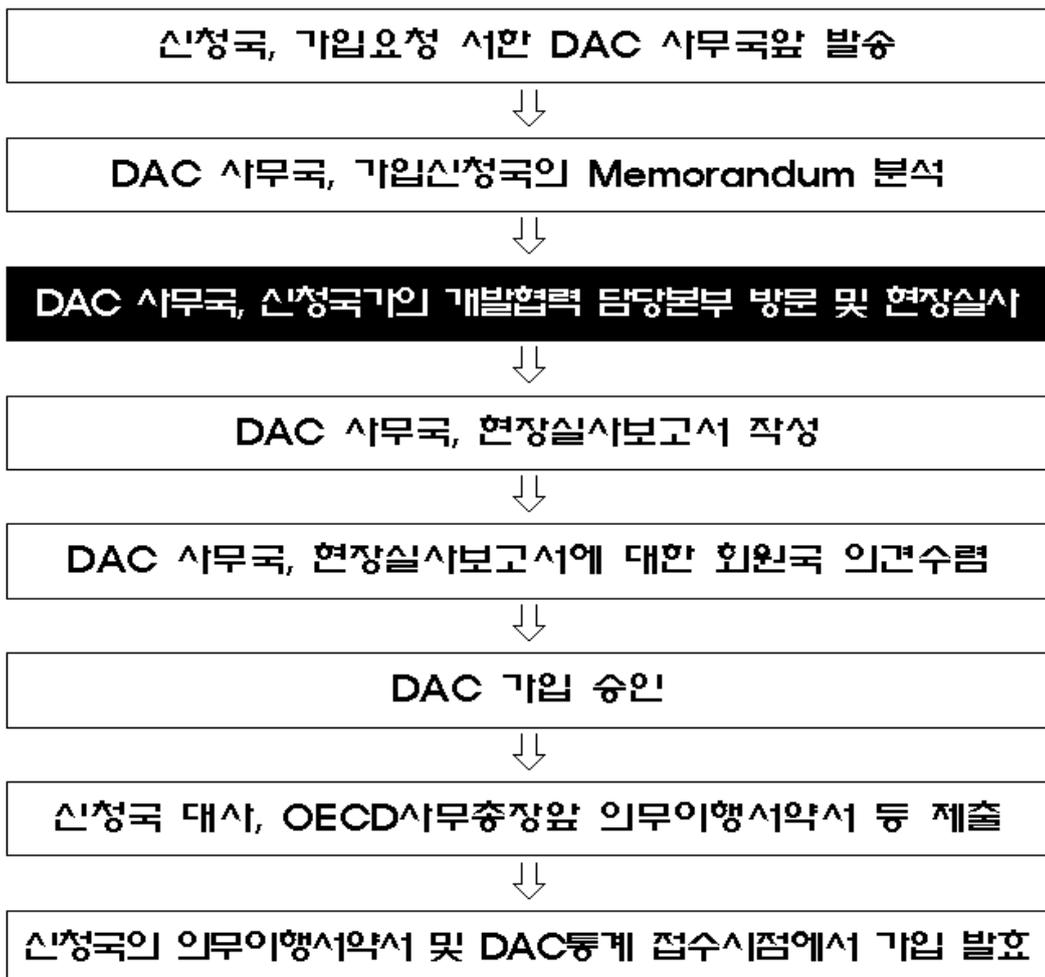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 '08년 우리나라에 대한 Special Review에서 DAC실사단이 권고한 **유·무상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정

다. 향후 일정

- DAC실사단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회원국 회람을 거쳐 '09.12월 예정인 중견관리자회의(Senior Level Meeting, SLM)에서 가입여부 확정
 - '09. 8.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우리측 회람(심사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오류 정정)
 - '09.10. 심사보고서, DAC회의 제출(회원국 검토)
 - '09.11. 아국 가입에 대한 승인/거부 권고안 회람 및 회원국 의견 수렴
 - '09.12. DAC의 SLM, 가입여부 확정

<DAC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 신규가입에 관련한 지침(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hip, 2004)에 따른 상기 가입절차 중 DAC실사단의 신청국 방문 심사가 완료되고, 현재 DAC실사단의 보고서 작성 단계 진행 중

2. DAC가입 가능성

- 우리나라의 DAC가입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
 - DAC 비회원국으로서 우리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OECD/DAC 활동 참여¹⁾로 OECD/DAC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제4차 High Level Forum 한국 유치를 성사시킴으로써 회원국내 아국 이미지 및 DAC활동 기여도를 크게 제고
 - DAC사무국 및 회원국간 아국의 DAC가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최근 OECD/DAC에서는 원조를 통한 전지구적 문제(Global issues : 세계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해결 기여, 원조효과 제고 및 관리(governance for development)체제 개선 등을 위해 비원조부문과의 연계, 회원국 확대 또는 비회원국의 참여확대를 모색²⁾
 - 특히, OECD비회원국이지만 대규모 원조공여국인 중국, 인도, 중동국가들의 국제공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신흥공여국인 아국의 DAC가입이 갖는 의미는 큼
 - 과거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수원국 및 신흥공여국 그룹과 전통적 공여국간 매개역할 기능에 대한 기대

1) 금년 3월, 14차 DAC 원조효과작업반(WP-EFF) 회의에서 아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새롭게 개편된 동 작업반의 공동부의장으로 선임, 5월 DAC-EPOC 공동고위급회의에서 아국 외교부 제2차관이 공동 의장으로 참여, 금년도 OECD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등

2) '09. 3월, DAC 원조효과작업반(WP-EFF) mandate 개정 및 회원국 확대를 단행하여 종전 57개 회원국(기구)에서 80여개국(기구)으로 확대

- 가장 최근 DAC신규가입 사례인 '99년 그리스 가입 심사 당시 그리스가 원조규모의 양적 기준³⁾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자간원조 비율이 매우 낮고, 수원국도 발칸 국가 위주로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입시 회원국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비해 현재 아국 DAC가입에 대한 회원국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DAC회원국이 이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인 원조의 비구속화 수준이 DAC평균대비 매우 낮아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가입을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3. 시사점

- 원조의 비구속화에 대한 peer pressure 가중 전망
 - DAC실사단은 DAC회원국으로서 원조의 비구속화 의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 가입이후 비구속성 차관사업의 수주결과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이 주시⁴⁾할 것이므로 실질적 비구속화가 필요함을 수차례 언급
- 유상·무상원조 비율보다는 증여율 제고가 중요
 - DAC실사단은 DAC은 유상원조 지양 또는 무상원조 확대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원조의 증여율 제고를 위한 '1978 Terms Recommendation' 충족을 권고하고 있음을 언급

3) 당시 그리스 가입심사에 적용되었던 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hip, 1995에 따르면, 신규가입을 위한 원조의 양적기준은 0.2% ODA/GNI이었으며, 현재의 양적기준인 "0.2% ODA/GNI 또는 1억불"은 2004년 개정에서 추가. '99년 기준 그리스는 0.2%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중장기 원조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대내외 공표함으로써 원조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

4) DAC사무국은 매년 회원국들의 비구속화권고(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DCs and HIPC, 2008)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DAC회의에 보고하며, 동 보고서에 각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도 포함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원조의 비구속화 이행을 촉구

- 아국 원조는 '08년 EDCF의 지원조건 변경으로 양허성차관의 증여율을 대폭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1978 Terms Recommendation'을 모두 충족 가능

□ 파리선언, 아크라선언 이행 점검 및 권고 강화

- 아국의 원조전략, 관리, 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국제규범 적용 및 이행 성과에 대한 DAC의 점검 강화 예상

□ 회원국으로서 즉각적 의무이행을 위한 준비 필요

- 회원가입시, DAC권고 이행, 산하기구 활동 참여, Peer review 참여 등 회원국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붙 임 : DAC 실사단 명단 및 주요일정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

(붙임) DAC 실시단 명단 및 주요일정

성 함	직 위
Karen Jorgensen	Head of Review and Evaluation
Simon Scott	Head of Statistics and Monitoring Division
Penny Jackson	Policy Analyst
Felix Zimmermann	Policy Analyst

일시 (장소)	논의주제	참석기관	
6.22 (월)	9:30~11:00 (외교부)	외교부, 기재부, KOICA, EDCF	
	ODA 총괄개관 및 전략적 추진방안		
	11:00~12:30 (외교부)		원조규모의 비구속화
	14:00~15:30 (외교부)		원조 전략, 정책 및 체제
	15:30~17:00 (외교부)		원조 효과성
	17:00~18:00 (외교부)	ODA 통계 및 Terms and Conditions of Aid	
6.23 (화)	9:30~11:00 (기재부)	기재부, 외교부, EDCF, KOICA	
	원조기관 조직 및 관리		
	11:00~11:45 (기재부)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	
	12:30~14:30	NGO 오찬 및 토론	NGO
	15:00~18:00 (KOICA)	KOICA 방문	KOICA
6.24 (수)	10:00~13:00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EDCF 방문	EDCF
	15:30~16:30 (외교부)	심사총평(wrap-up discussion)	외교부, 기재부, KOICA, EDCF

목차보기

ODA 토포픽 2

'Aid for Trade'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요약】

- 다자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무역기반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Aid for Trade' 논의 시작
 - 'Aid for Trade'는 (1) 무역 역량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2) 공급측면 제약 해소를 위한 경제 인프라 및 생산부문 설비 제공, (3) 다자무역체제 적응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구성
 - 'Aid for Trade'는 양자간 원조의 약 30%를 차지
- AfT 논의는 공여국의 경우 다자무역협상 진전, 수원국의 경우 선진국 수출전략 및 노하우 습득의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Aid for Trade' 지원 확대로 다자무역협상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에 대비 필요
 - 무역정책 부문에 대한 지원 및 기술협력과 인프라 연계 지원 확대 필요

1. 'Aid for Trade'의 등장 배경

□ 등장 배경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의 다자무역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자 개발도상국의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불신문제 대두
 -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관련 원조가 성공적인 다자 무역 협상 진전의 선행조건으로 부각
 - 관세인하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다자무역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선진국의 무역관련 원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 개도국 정부는 관세인하로 세수가 줄어들고, '보호관세' 효과가 사라지면서 자국 산업이 위협 받는데 대해 반발
- WTO는 2005년 6차 각료회의에서 'Aid for Trade' Initiative를 발족하며, 적극적으로 다자무역 증진을 위한 원조 확대 논의 시작
 -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3개 범주(기술협력, 생산설비 및 인프라 구축, 다자무역체제 적응)에 대한 논의 시작

□ 'Aid for Trade' 개념 발전 상세 경위

- 우루과이 라운드('94년) 이후 보다 강도 높은 무역자유화 진전을 위해 '96년 WTO 1차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이 전개되었으나, '99년 3차 각료회의는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
 - 최혜국대우 관세 인하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표면화
- '01년 WTO 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협상 명칭을 정하고 다자무역 협상에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 DDA 협상에 개도국 예외 조항 다수 포함
- '05년 WTO 6차 홍콩 각료회의, 'Aid for Trade' Initiative 주창
 - 'Aid for Trade' 개념정립 및 모니터링을 위한 Task Force와 Integrated Framework 구성
 - 이때, 'Aid for Trade'는 기존의 무역관련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제약(생산력 증대 및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인프라 및 생산부문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
 - 동 Initiative하, 1,2차 Global Review('07, '09) 서베이 진행
- '06. 7월 WTO의 DDA 협상 중단 선언으로 다자무역협상의 진전 방향은 불투명해 졌으나, '07년과 '09년 2차례에 걸친 Global Review 서베이 등 'Aid for Trade'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음
 - '09년 서베이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Aid for Trade'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고 있어, 향후 다자무역협상 재개시 'Aid for Trade'의 영향력은 늘어날 전망
 - 2차 Global Review('09): '05년 대비 '07년 'Aid for Trade' 21% 증가

5) 기존의 다자무역협상이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DDA협상은 개발도상국 우대를 위한 차별 대우(예,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포함시켰으며, 이는 WTO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원칙과 상반되더라도 개도국을 보호하겠다는 의미

2. 'Aid for Trade'의 정의 및 구성

□ 정의

(그림1) 'Aid for Trade'의 구성

<p>(1) 무역관련 기술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규제 제도 개선 · 무역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 	<p>(2) 공급측면 제약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인프라 (도로 등) · 생산부문 (농림수산 등) 	<p>(3) 다자무역체계 적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무역체계 적응을 위한 원조 (관련 예산지원 등)
---	---	---

○ '06년 OECD와 WTO⁶⁾는 무역관련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인프라, 생산부문을 포괄하는 정의를 수립하고, 통계수집을 위한 실무적인 범위도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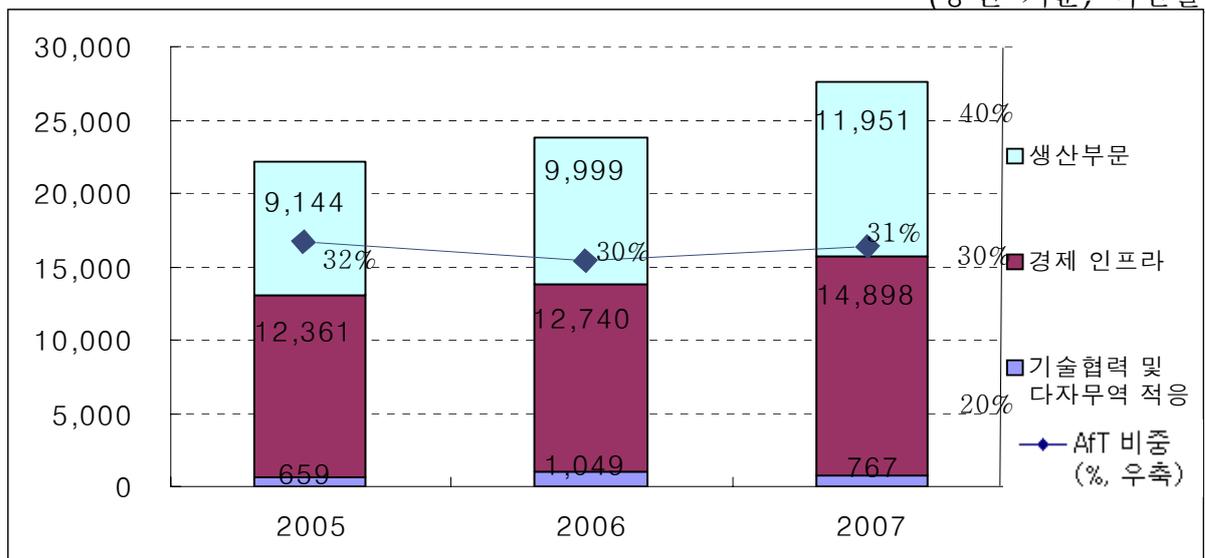
- 'Aid for Trade'(이하 "AfT")는 (1) 무역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협력, (2) 공급측면 제약 해소를 위한 경제 인프라 및 생산부문 설비, (3) 다자무역체계 적응을 위한 예산지원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경제 인프라와 생산부문 지원이 대부분(96%~97%)을 차지

· 무역관련 기술협력 비중은 5% 미만이며, 다자무역체계 적응을 위한 예산지원은 '07년 처음으로 18백만불이 공여되어 그 비중이 더욱 미미함

- AfT는 전체 배분가능한(sector-allocable) 양자간 원조의 30%~32%를 차지

(그림2) 전세계 AfT 추세

(승인 기준,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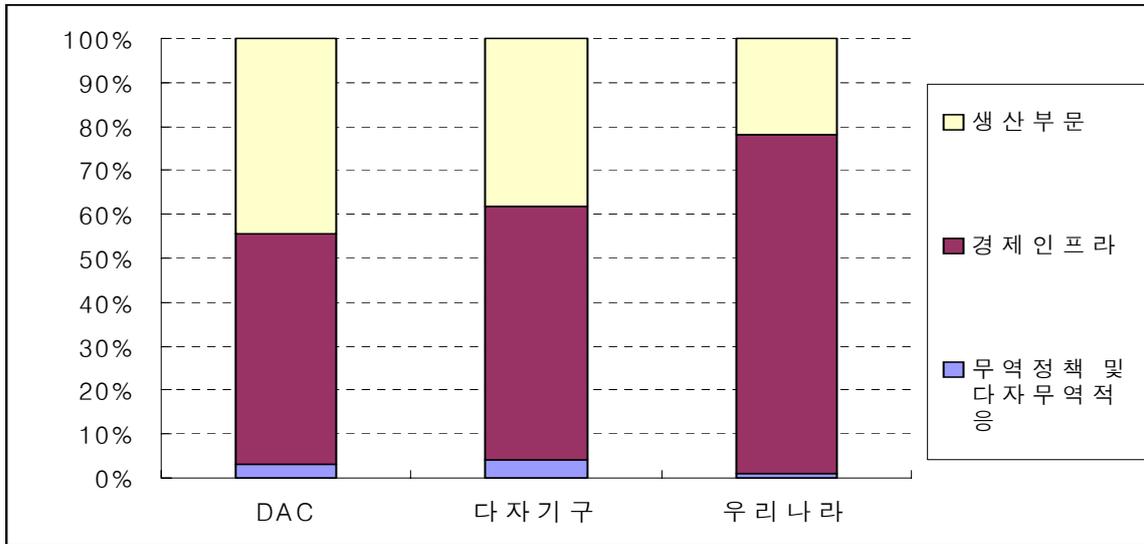


주: 통계작성시 (1) 무역관련 기술협력과 (3) 다자무역체계 적응은 그 비중이 미미해 "기술협력 및 다자무역 적응"에 함께 표시하며, (2) 공급측면 제약 해소의 경우 생산부문과 경제인프라로 나누어서 표시

자료: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DAC, 다자기구 및 우리나라)⁷⁾

6) WTO(2006), "Recommendation of the Task Force on Aid for Trade" 및 OECD(2006), "Aid for Trade : Making it Effective" 참조

(그림3) 공여주체별 'Aid for Trade' 구성비('05~'07년 평균)



자료: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 공여주체별로 Aft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인프라의 비중(77%)이 DAC(52%) 및 다자기구(58%)에 비해 높은 반면, 무역관련 기술협력의 비중은 매우 낮음

(표1) 공여주체별 'Aid for Trade' 구성

(승인기준, 백만불, '05~'07년 평균)

	DAC			다자기구			우리나라		
	양자간	무상	유상	양자간	무상	유상	양자간	무상	유상
무역관련 기술협력 및 다자무역체제 적용	500	497	3	321	291	30	3	3	-
공급측면 제약 해소	경제인프라 (유상비중)			경제인프라 (유상비중)			경제인프라 (유상비중)		
	8,527	3,976	4,551 (53.4%)	4,570	1,866	2,704 (59.2%)	235	63	173 (73.4%)
	생산부문			생산부문			생산부문		
	7,262	5,434	1,828	3,035	1,040	1,995	67	30	37
Aft 합계	16,290	9,907	6,383	7,927	3,198	4,729	306	96	210
양자간 배분가능 원조	56,613	46,619	9,994	23,003	13,413	9,591	727	314	413
Aft 비중(%)	28.8	21.3	63.9	34.5	23.8	49.3	42.1	30.7	50.8

자료: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 유무상별로 살펴보면, 기술협력은 대부분 무상으로 공여되고 있으나, 경제인프라는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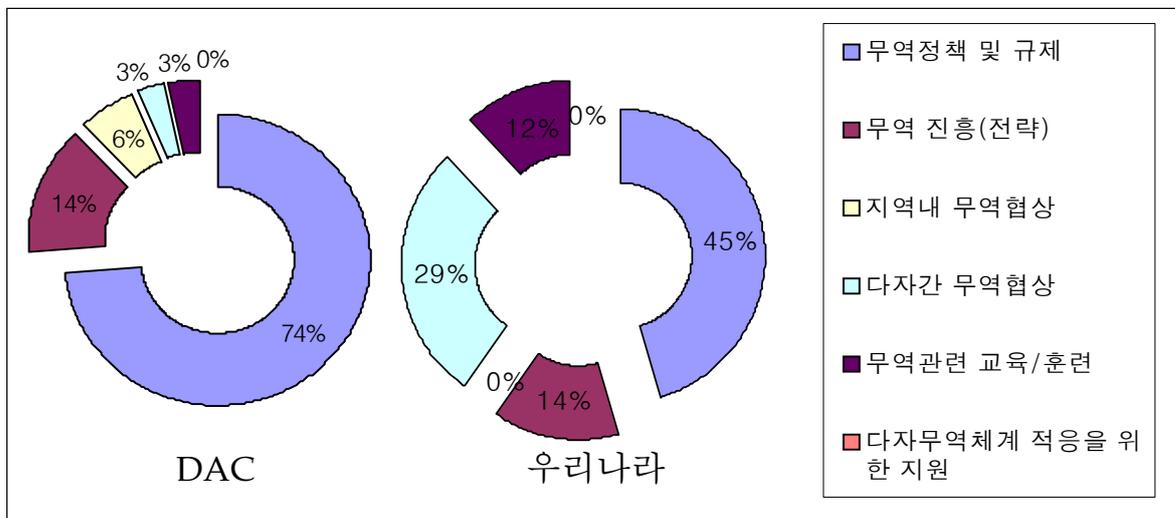
7) OECD/WTO의 2009 2차 Global Review 통계는 Annex 1과 Annex 5의 CRS 코드가 맞지 않고, Annex 1 프랑스 데이터는 표의 행합계 조차도 잘못 계산되는 등 오류가 많아 CRS 온라인 DB 활용

□ 'Aid for Trade' 구성요소별 세부 내용

(1) 무역관련 기술협력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 Capacity Building)

- 무역관련 기존 정책 및 규제 개선을 위한 policy advice, 무역관련 정부 부처 직원의 역량 증진, 빈곤감축전략(PRSP)상 무역전략 활용방안 검토, 다자무역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제약조건 제거 등을 말함
- 예) 수출 집중 품목 선정, 세관절차 개선을 통한 세관 소요일 단축 등
-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기술협력은 DAC 회원국에 비해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 지원비중이 낮은** 반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 향후 무역관련 기술협력 규모 확대시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 중심 규모 확대 필요**

(그림4)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기술협력 구성 비교
(승인기준, 백만불, '05~'07년 평균)



자료: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2) 공급측면 제약 해소 (Supply-side Constraints)

- 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항만 등의 건설 및 농림수산, 금융, 산업·광업, 관광 등의 생산 기반 조성을 의미함
- 예) 아프리카 1/4 차지하는 내륙국(landlocked countries)간 교통망 마련 (내륙국은 연안국에 비해 운송료가 50% 높고 교역량은 50% 낮음)

-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DAC 회원국과 다자기구는 교통, 에너지, 농업, 산업, 서비스 지원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교통, 통신, 농업의 비중은 높고 에너지, 서비스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유상원조 활용 정도는 DAC 회원국이 40%, 다자기구와 우리나라는 60%대로, 공급측면 제약 해소를 위한 인프라구축에는 유상원조의 활용도 높음

(표2) 공여주체별 경제인프라 및 생산부문 지원 내용

(승인기준, 백만불, '05~'07년 평균)

		DAC (유상)		다자기구 (유상)		우리나라 (유상)	
경제 인프라	교통	4,562	2,640	2,854	1,566	139	130
	통신	321	77	135	85	68	28
	에너지	3,644	1,835	1,581	1,054	28	15
	소계 (유상비중)	8,527	4,552 (53.4%)	4,570	2,705 (59.2%)	235	173 (73.4%)
생산부문	비즈니스 기타서비스*	1,203	125	243	40	1	-
	금융 및 재무서비스	1,325	625	301	274	1	-
	농업	2,841	436	1,662	1,176	47	37
	임업	479	282	91	51	5	-
	어업	194	14	91	54	1	-
	산업	676	169	563	341	10	-
	광업	347	15	52	39	-	-
	관광	198	162	33	20	1	-
소계 (유상비중)	7,263	1,828 (25.2%)	3,036	1,995 (65.7%)	66	37 (56.1%)	
합계 (유상비중)	15,789	6,379 (40.4%)	7,605	4,699 (61.8%)	303	210 (69.3%)	

*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는 무역관련 협회 및 상공회의소 지원,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민-관 협력을 위한 연계, e-commerce 등이 있음

(3) 다자무역체제 적용 (Adjustment)

- 다자무역체제 적용을 위한 관련 예산지원, 국제수지불균형 지원자금 제공 등
 - 예) 다자무역 심화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 분야 종사자 앞 이전지출,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적 지출
- 현재까지 실적은 '07년 캐나다(0.3백만불), EC(17.4백만불) 뿐으로, 동 분야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

Cf. Trade Development 마커 (OECD/DAC의 무역원조 정의)

- WTO Task Force의 정의와는 별도로, OECD/DAC은 원조 통계 수집시 각 원조사업별로 사업담당자가 무역개발과의 관련성을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마커(marker)를 설정하여 2007년 데이터부터 수집 시작
 - 동 마커는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경제인프라를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담당자의 무역개발 관련성 평가가 포함돼, 'Aid for Trade' 보다는 더 엄격한 범주에서 무역관련 원조 정의
 - DAC 및 다자기구 원조 사업의 4.0%(07년)가 동 마커로 표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08년 처음 수집시 양자원조의 2.6%가 동 마커로 표시됨

3. 'Aid for Trade'의 수원 및 공여 동기

□ 수원국이 선정한 무역개발의 최우선 과제⁸⁾

- 2009 2차 'Aid for Trade' Global Review 서베이에 참여한 83개국 중 72개국은 자신의 개발전략에 무역을 주요 과제로 포함(mainstream)하고 있으며,
 - 이들 수원국은 자국 무역부문 발전을 위해, 1. 네트워크 인프라(전력, 수력, 통신망) 구축, 2. 경쟁력 강화, 3. 수출품목 다변화, 4. 무역정책 분석·협상·집행의 네가지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
 - 최빈국(LDC)의 경우, 1.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2. 무역정책 분석·협상·집행, 3. 수출품목 다변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은 반면,
 - 상위중소득국(UMIC)의 경우, 1. 경쟁력 강화, 2. 수출품목 다변화, 3. 무역정책 분석·협상·집행을 최우선 순위로 꼽아, 소득별로 우선순위는 차이를 보였음
- 무역 기반이 취약한 최빈국의 경우, 기본적인 무역 기반 조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의 경우, 자국 무역 도약 및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8) OECD/WTO의 2009 2차 Global Review 서베이 중 수원국 대상 질문 Q1.2(자국의 무역관련 역량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및 Q3.8(효과적인 Aft 3가지 선정)은 아래 12가지 보기를 사용
- 무역 정책 및 규제: ① 무역정책분석·협상·집행, ② WTO 가입관련, ③ 무역 진흥
- 경제인프라: ④ 네트워크 인프라(전력, 수력, 통신망) 구축, ⑤ 국가간 연결망, ⑥ 기타 교통
- 생산부문: ⑦ 경쟁력 강화, ⑧ value chains, ⑨ 수출품목 다변화
- 기타: ⑩ 다자무역체계 적응, ⑪ 지역무역협정, ⑫ 기타

- 또한, 수원국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AfT는 1. 무역정책 분석·협상·집행, 2. 무역 진흥, 3. 경쟁력 강화, 4. 수출품목 다변화, 5.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순으로 나타나, 공여국의 수출 진흥 전략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AfT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참고) 수원국이 꼽은 효과적인 AfT 사례

- 스리랑카: WTO의 무역 협상 전문가 소그룹 양성 훈련 사업
- 가나, 케냐, 말라위: 세관절차 간소화 사업
- 벨리즈, 잠비아: EU의 수출품목(바나나, 원예·화초)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공여국의 'Aid for Trade' 공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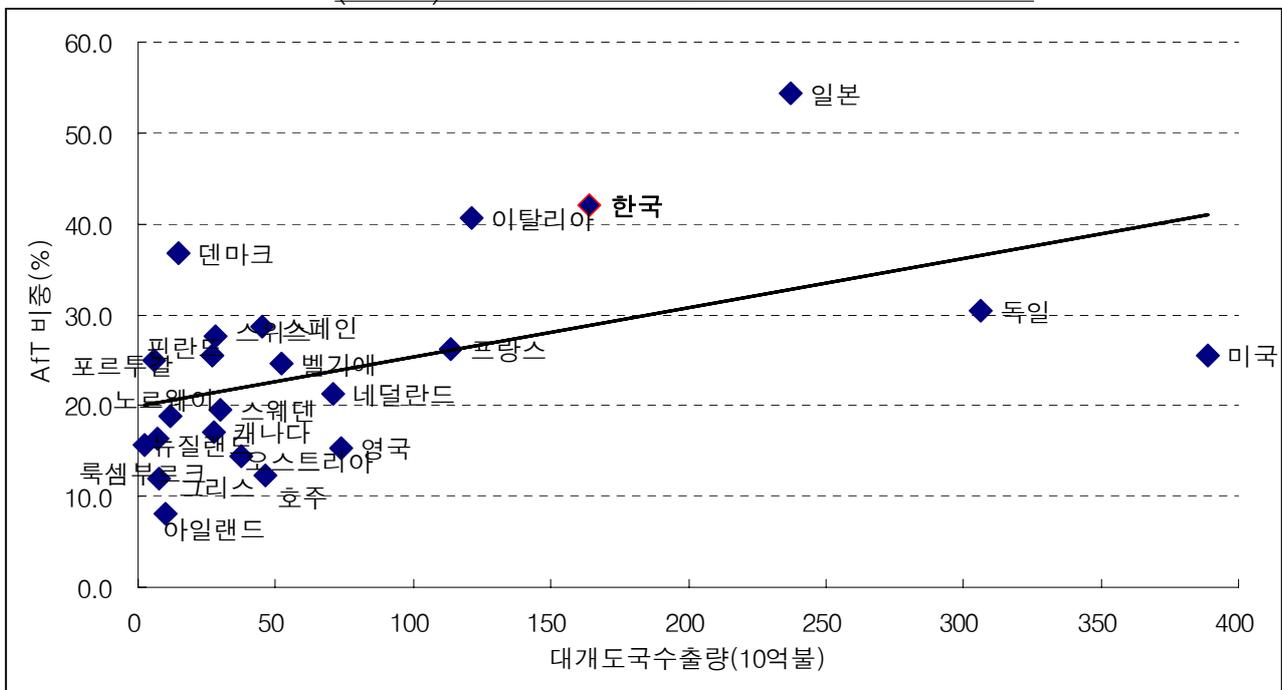
- 대 개도국 수출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원조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대 개도국 수출 1,000억불 이상 국가의 AfT 비중 :

일본(54.3%), 한국(42.1%), 이탈리아(40.7%), 독일(30.5%), 프랑스(26.3%), 미국(25.6%)

- AfT 비중이 20% 미만인 국가의 대 개도국 수출량은 평균 290억불인 반면, AfT 비중이 20% 이상인 국가는 평균 1,250억불을 개도국 앞 수출

(그림5) 대 개도국 수출량과 'Aid for Trade'



자료: 1. 대 개도국 수출량의 경우,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에 대한 DAC 회원국의 수출량 자료(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05~'07 평균) 활용
2. 'Aid for Trade' 비중의 경우,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의 '05~'07년 평균

4.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원조 사례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의 무역 정책 제언 사례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⁹⁾는 개도국의 거시경제 관련 정책 제언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으로, '04~'08년간 12개국 14건의 사업 진행

- 수원국의 정책 수요에 따라 주제 선정 후, 국내 정부·연구진과 수원국 정부와의 협조하 정책 분석 및 제언

- AFT 사례 :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진흥 전략 수립('04년),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 전략 수립('07~'08년)

○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을 위한 전략 수립 사례
(WTO Accession Strategies for Azerbaijan, '07~'08년)

- 한국의 WTO 가입 및 수출 주도형 전략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과 관련된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언('07년 1차)

- 아제르바이잔 WTO 가입에 대비한 수입 및 관세부과 전략, 농업 부문 개발 방안 등에 대해 '08년 2차 연구 진행

※ (참고) 아제르바이잔 WTO 가입 관련 핵심 정책 제언('07년 1차)

- 서비스분야 협상시 벤치마크를 최근 신규 WTO 가입국(newly acceded members)에 맞출 것

- 유사한 경제상황下 국가와 비교할 때 아제르바이잔은 개도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이나, 개도국 지위 자체에 함몰되기 보다는 시장 개방의 수위를 정하는데 집중해야 함

•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얻는 대신 개방의 수위를 높였음을 주목해야 하며, DDA 농업부문 협상 이후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의 효과가 줄었음을 염두에 둘 것

- 수출품목이 석유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품목 다변화 필요

-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전략에서 수출진흥(export promotion)으로 국가 무역 전략 수정 필요

9) www.ksp.go.kr

□ EDCF의 무역관련 인프라 구축 사례

- EDCF의 무역관련 원조는 유상 차관 특성상 경제인프라 및 생산부문 지원에 집중
 - '08년말까지 총 100건 24억불을 지원했으며, 그중 교통부문(12.1억불) 지원 비중이 가장 크며, 국가전산망 구축 등의 통신 부문(4.8억불), 송변전설비 등을 지원한 에너지 부문(4.7억불) 지원이 그 다음 많았음

EDCF의 경제인프라 및 생산부문 지원 현황('87~'08)

(단위: 백만불, 건)

분야		승인액	건수
경제인프라	교통	1,213	51
	에너지	466	20
	통신	481	25
생산 부문	농임수산	167	7
	산업	56	4
합계		2,383	100

○ 도미니카(공) 관세청 전산화 사업 사례

- 도미니카(공)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Plan Nacional de Competitividad, 2004~2008)' 및 '전자정부(e-Dominicana)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EDCF의 대표적 Aft 사례
- '05년말, 총 사업비 28.9백만불(EDCF 차관한도 23.0백만불) 규모의 '관세청 전산화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방침 결정
 - 사업 범위: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시스템 개발, 백업센터 설치, IT 기자재 구매, 관련 교육·훈련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 차관지원 조건: 이자율 연 1.7%, 상환기간 25년(거치기간 7년), 증여율 70.6%
- 본 사업실시를 통하여 통관 및 화물관리 소요 시간 단축 및 기업의 물류 및 금융비용 절감 등 관세업무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되며, 부수적으로는 관세징수에 따른 비리 근절, 국제관세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 달성 등이 기대됨
 - '09. 7월 현재, 68% 진행(원화 지출 기준)

□ 무역관련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과 인프라 사업 연계

-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등의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는 공여기관간 분업을 통해 원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조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
- 우리나라도 KSP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파악된 수원국 무역 원조 수요를 인프라 사업 등으로 연계하는 기술협력과 인프라의 패키지형 지원 확대를 통해 공여기관간 협력을 높이고 수원국 주인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시사점

□ AFT 논의는 공여국의 경우 다자무역협상 진전, 수원국의 경우 선진국 수출전략 및 노하우 습득의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무역기반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AFT 논의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대 개도국 수출량이 많은 공여국의 경우 AFT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
- 수원국은 선진 수출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무역정책 부문 기술지원, 무역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AFT 지원 수요가 높음

□ 우리나라는 AFT 논의에 적극 참여해, 향후 다자무역협상 및 양자간 자유무역 협상에 대비

- 다자무역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으나, AFT 논의는 ODA 규모확대 및 원조 효과성 제고 논의와 함께 지속됨
 - 최근 OECD와 WTO의 2009 2차 Global Review는 AFT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

□ 특히, 무역정책 부문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 확대 및 동 분야 지원시 발굴된 인프라 사업을 유상차관으로 제공하는 유무상 연계 필요

- 우리나라 AFT 중 무역정책 부문 기술협력 규모가 작고, 우리나라 여타 원조 사업과의 연계도 미흡
 -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대한 개도국의 학습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동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여타 원조사업 발굴과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자 료 : WTO, "Recommendation of the Task Force on Aid for Trade" (2006, AfT 정의)
OECD, "Aid for Trade : Making it Effective" (2006, AfT 정의 및 통계)
OECD/WTO,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2007, 1차 Global Review 서베이 결과)
OECD/WTO,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9: Maintaining Momentum" (2009.7, 2차 Global Review 서베이 결과)
OECD, "Trading Out of Poverty : How Aid for Trade Can Help" (2009)
OECD,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 Addendum on Aid for Trade monitoring (DCD/DAC(2007)39/ADD)

붙 임 : 1. OECD/DAC의 통계분류 기준상 분야코드별 Aid for Trade
2. '07~08년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기술협력 사업 목록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붙임1)

OECD/DAC의 통계분류 기준상 분야코드별 Aid for Trade

무역정책 및 규제 관련 지원		경제 인프라		생산능력증진		다자무역체제 적응	
33110	무역정책 및 규제	210	교통	250	비즈니스/기타서비스	33150	다자무역체제 적응을 위한 지원
33120	무역 진흥(전략)	220	통신	240	금융 및 재무서비스		
33130	지역내 무역협상	230	에너지	311~313	농임어업		
33140	다자간 무역협상			321	산업		
33181	무역관련 교육/훈련			322	광업		
				332	관광		

자료: OECD/WTO 2009 2차 Global Review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9"), Annex 1

(붙임2)

'07~'08년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기술협력 사업 목록

(1만불 이상 승인 사업, 다자기구 집행사업 제외)

연도	수원국	사업명	사업설명	승인액 (천불)	지출액 (천불)
2007	카자흐 스탄	Export Promotion and Special Economic Zones Improvement in Kazakhstan	To provide consulting on the export promotion and SEZ improvement	1,350	387
	아제르 바이잔	Knowledge Sharing Program	A consultation project designed to assist Development Partnership Countries in key policy areas by sharing specific Korean development knowledge and experience	395	118
	알제리	Training Program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Algerian Officials	166	166
	우즈베 키스탄	Knowledge Sharing Program	A consultation project designed to assist Development Partnership Countries in key policy areas by sharing specific Korean development knowledge and experience	133	40
	우간다	Training Program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or African Countries (UNDP Joint Training)	114	114
	베트남	Training Program	Korea - Singapore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Program	106	106
	파푸아 뉴기니	Training Program	Customs Administration Technique	95	95
	이라크	Training Program	International Trade and WTO	82	82
	부르키 나파소	Training Program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or African Countries (UNDP Joint Training)	78	78

	베트남	Training Program	International Trade, WTO and FTA (Colombo Plan Joint Training)	66	66
	몽골	Training Program	Export Promotion and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for Mongolian	51	51
	베트남	Training Program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ASEAN Investment Negotiators	43	43
2008	몽골	Project for Formulating a Master Pla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Khalkhgol Region in Mongolia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Kazakhstan National Export Strategy through the analyses of the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systems in benchmark countri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improvement in Kazakhstan	2,550	1,366
	카자흐스탄	Project for Promoting Kazakhstan's WTO Accession and Analyzing its Economic Impact	To support Kazakhstan's accession to WTO through analyzing its economic impact to key sectors and providing policy recommendations in related fields	1,500	154
	아제르바이잔	Project for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Azerbaijan	To develop capacity building on formulating FDI policy and strategy as well as on administrative services and institutional support	1,000	338
	에콰도르	Training Program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168	168
	이집트	Organization Innovation Management, Egypt	To provide Organization Innovation Management, Policy Analysis and Crisis Management	128	128
	콜롬비아	Training Program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108	108
	요르단	Training Program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or Jordanian Officials	91	91
	양자미배분	Training Program	Trade Promotion	85	85
	카자흐스탄	Training Program	Customs Administration Technique	76	76
	인도네시아	Training Program	3rd Workshop on International Trade & WTO for Indonesian Officials	69	69
	아시아미배분	Training Program	Korea-Singapore Joint Training Program on Trade and Investment	69	69
	양자미배분	Training Program	International Trade and WTO	63	63
	인도네시아	Training Program	Trade Facilitation	61	61
	카자흐스탄	Training Program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or Kazakhstan	59	59
	양자미배분	Training Program	International Trade, WTO and FTA (Colombo Plan Joint Training)	50	50
	도미니카(국)	Policy Practitioners Workshop	To provide consultation to Dominica's officials on Korea's export promotion policy	48	48

목차보기

ODA 단신 1

OECD DAC 제47회 고위급회의(HLM) 주요 논의 내용

1. 회의 개요

- OECD DAC은 매년 5월 원조 주무부처 장관관 또는 기관장이 모여 정치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HLM)를 개최
 - 보통 HLM 의제는 전년도 12월에 개최되는 중견관리자회의(Senior Level Meeting)에서 실질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며, 고위급회의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임
 - 2009. 5. 27(수) ~ 28(목)일간, 경제위기 대응 방안, DAC의 장기 과제 선정(Strategic Reflection Exercise), 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 기후 변화부문 ODA 확대 등을 논의 주제로 개최
 - 동 회의 개최에 이어, DAC/EPOC 고위급 회의(5. 28~29)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과 개발 관련 이슈 심층 토의

OECD/DAC의 정례회의 목록

회의명	주요 논의 내용	개최주기	주요참석자
고위급회의	경제위기 대응방안, 기후변화 등 매년 핵심 쟁점에 대한 각국 수장의 정치적 의지 확인	연1회	장관관 또는 기관장
중견관리자회의	고위급회의 의제에 대한 실질적 의견 수렴	연1회	관리자급
DAC 정례회의	DAC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월1회 (보통 7-8월제)	관리자 및 실무자
DAC 8개 산하기구 회의			
WP-STAT	ODA 적격성, ODA 분류기준 변경 등 ODA 통계작성을 위한 실무 지침 마련 ODA 통계 수집 결과 모니터링	공식회의 및 비공식 회의 (연2회)	실무자
WP-EFF	DAC 회원국, 기타공여국, 수원국, CSO가 모두 회원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모니터링 등을 추진	장기회의 연회 cluster별 수시	실무자
기타	POVNET, GOVNET, GENDERNET, ENVIRONET, EVALUATION NETWORK 등	연 1~2회	실무자

2. 주요 논의 내용

□ ODA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 방안 논의

- HLM 참가국들은 개도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양자간 원조, 국제금융기구 출연, 기후변화펀드 등의 증액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IMF등 국제금융기구 주도의 대응에 공조할 것을 천명
 - IMF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양허성 차관을 단기적으로 3배 늘릴 계획
- HLM 참가국들은 ODA 정책과 비ODA 정책간 일관성(policy coherence) 제고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하며, 비ODA 자금이 경제위기하 개발친화적(development-friendly)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 수렴
 - 보호주의(Protectionism)의 재등장 경계
 - 경제위기하에서도 사회적 지출 확대 및 사회안전망 조성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친빈곤(Pro-poor) 성장을 위한 고용 및 사회보장의 역할” 정책문서 채택
- HLM 참가국들은 ODA 규모 확대 등 공동 위기대응 종합 방안인 DAC Action Plan 채택(붙임 1)
 - 미국의 제안에 의해 ‘다자기구에 대한 추가 지원’ 고려 부분 추가

□ DAC의 장기 전략 과제 선정

- Strategic Reflection Exercise*는 DAC이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global public goods(예, 기후변화, 안보)’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 (“Development needs more than aid”)
 -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존하는 원조 흐름의 효과성을 높이고, 회원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 개진 (“In development, aid is core”)
- * ‘07년 OECD Council은 DAC의 향후 10~15년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 중견관리자로 구성된 Reflection Group을 구성하고 Strategic Reflection Exercise를 수행할 것을 권고

- 동 Exercise에 따라 새 Mandate 작성, 핵심 기능 강화, 기존 조직의 통합·조정 등의 개혁이 단행될 예정(붙임 2)
- 새 Mandate 작성 : DAC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global public goods, global governance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예정
- DAC의 핵심기능 강화 : 원조효과성 제고, 원조통계수집, Peer Review 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Network 통합·조정
- DAC 명칭 변경 :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와 Development Affairs Committee등이 논의 되었으나,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렴

□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 HLM 참가국들은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의 노력이 **Cross-cutting issue**로서 전면에 부각되지 못한 점, 여성이 경제 및 식량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점,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
- 참가국들은 아크라행동계획을 여성 역량 강화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관련 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했으며, 특히 ‘political representation’, ‘economic empowerment’, ‘violence against women’ 중 **violence** 근절 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의견 수렴

□ 기후변화부문 ODA 확대 관련 논의(DAC/EPOC 고위급 회의 준비)

- HLM 참가국들은 개발과 일관적이지 않은 독립적(stand-alone) 기후변화 펀드가 무차별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기후변화 지원 확대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다음

3. 시사점

□ 경제위기하에서도 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회원국간 노력 강화

- 금번 HLM에서는 경제위기가 수원국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회원국간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며,

- 경제위기하 ODA 규모 유지를 위한 Action Plan을 채택하고, 동 문서를 OECD Council, G20 등에 상정함으로써, 공여국의 ODA 규모 축소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에 구속력을 더했음
 - 또한, 경제위기하에서도 여성, 고용, 사회적보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파리선언 등의 원조효과성 논의 및 원조예측성 강화 논의도 동시에 진행됨
- 개발과 무역, 환경, 이주 등 기타 정책과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DAC의 개혁방향 논의
 - DAC의 장기 과제 선정(Strategic Reflection Exercise)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어, 향후 DAC의 mandate, 핵심 사업부문 등에 변화 예상
 - 이 과정에서 개발 정책과 개발과 관련된 기타 정책(무역, 환경, 이주 등)간 일관성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DAC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HLF-4 개최 및 DAC 가입을 앞두고 DAC의 변화 방향에 부합하는 노력 필요
 - 국내 원조 정책과 무역, 이주, 산업 정책간 일관성 논의가 현재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특히 HLF-4 개최국 선정, DAC 가입신청 등의 배경하에서 DAC의 개혁 방향에 주목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유관기관간 관련 논의 강화할 필요

붙임 : 1. DAC HLM Action Plan
2. Strategic Reflection Exercise 권고 내용

작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붙임 1)

DAC HLM Action Plan

(DAC and Non-DAC OECD Donors Responding
to Global Development Challenges at a Time of Crisis)

A. Delivering on our pledges

- 현존하는 ODA 규모 확대 계획(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재확약
- 구속성 원조 지양
- 개발 관련 모든 정책수단의 일관된 사용

B. Integrating crisis management with long-term growth and the MDGs

- 수원국이 현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장기적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예; 고용과 사회보장, 농업과 식량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등)

C. Embedding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AA into the crisis response

- 파리선언 및 AAA의 핵심 이행과제인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원조의 예측성 강화를 현 경제위기 대응책과 통합
-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수원국 국가전략의 맥락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해쳐서는 안됨
- 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국제기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장기 회복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phase out' 하도록 함

D. Signaling greater predic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response

- 다자 기구에 대한 추가 지원 고려
- 다자 기구의 위기대응 기금에 대한 자발적 양자간 지원 증가

E. Ensuring complementarity between ODA and other development flows

- ODA와 비ODA의 조화 감시 및 수원국의 채무건전성 증진
- ODA와 그 외 다른 개발재원형태 사이의 상보성(complementarity) 증진

F. Monitoring and accounting for our responses to the crisis

- 위기 대응 현황에 대한 공동 감독
- 다음 HLM에서 Action Plan 이행 평가

(붙임 2)

Strategic Reflection Exercise 권고 내용

- DAC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분야(Strategic Priorities)
 - a) 4개 'Core Areas'(원조효과성 제고, 원조통계수집, Peer Review, 정책 제언)에 더욱 집중
 - b) 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 (원조 분업 등)
 - c) 정책 일관성 제고 노력
 - 수원국의 정책 일관성 제고 역량 강화, 일관성 지표(coherence indicators) 마련, 개발 인식 증진, 글로벌 포럼 지원 등
 - d) 개발정책에 'Global Public Goods' 접목 노력
 - 기후변화, 평화, 안보 문제 등에 우선순위 부여 등
- 향후 계획(Adaptation of DAC)
 - a) 향후 5년간 DAC의 역할 및 mandate 설정
 - MDG 및 OECD의 세계화 기조에 기반을 두되, 정책일관성 제고, Global Public Goods,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주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Non-DAC 회원국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 광범위한 개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며, OECD의 다른 부분과의 조화도 고려
 - b) 모든 업무 영역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회원국 확대(expand membership) 등 개발협력 커뮤니티 확대 추구
 - c)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체제 개편
 - Working Party 및 Network가 DAC 활동의 핵심으로 머물러야 하지만, 앞서 마련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개편이 필요
 - 몇 개 Network를 묶어 새로운 하나의 Working Party 구성
 - d) OECD 및 글로벌 포럼 등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지지 활동 확대(advocacy work)
 - e) 개발관련 사업들이 OECD 내 조직간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

목차보기

ODA 단신 2

OECD DAC 제60차 통계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DAC 통계작업반(WP-STAT)¹⁰⁾은 '09. 5월 제60차 통계작업반회의 및 제1차 ENVIRONET/WP-STAT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통계 보고양식 개정안 확정,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 선정기준 및 변경 등에 관해 논의

2. 주요 내용

가. 통계 보고양식 개정안 확정 - 2010 flows부터 적용

- DAC table 1 개정 관련, 사무국이 제안한 Alternative 1안이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서면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 승인할 예정 (붙임: DAC Table 1 개정양식 참조)
 - 기존 DAC table 1에서는 무상원조만 원조형태별로 자세하게 분류되어왔지만, 동 개정안에서는 유·무상원조 모두 원조형태별로 분류
 - 또한, 기술협력의 형태가 보다 세분화되는 특징이 있음
 - 전문가 파견, 장학금 및 연수생 지원, 간접연수생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
- DAC table 5의 분야별 분류 개정안 승인
 - 회원국들은 'NGO에 대한 지원'을 분야 카테고리에서 삭제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동 사항을 반영한 DAC 통계지침을 올해 하반기에 서면절차를 통하여 승인할 예정

10) 통계작업반(WP-STAT)은 DAC의 8개 산하기구 중 하나로서, 수원국과 다자간 원조기구에 대한 자금 흐름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검토·개선하며, ODA 적격성 여부, 통계보고 기준 및 용어 정의, 통계자료의 정확성, DAC 통계자료 생산 등에 관해 DAC에 권고

- 다만, 회원국들은 일반예산지원, NGO에 대한 지원 및 공여국내 난민비용 등 현재 별도 분류되는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통합되는 경우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사무국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함

DAC table 5 개정안 (사무국 제시안)

분야 구분	비고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생산 분야	
다부문	
환경 보호(일반)	
기타 다부문	일반예산지원, NGO에 대한 지원 ^{주)} 포함
물자원조	
일반예산지원	삭제(기타 다부문에 포함)
개발식량원조	
기타물자원조	
부채 관련 지원	
인도적 지원	
행정비용	삭제(비배분/비특정에 포함)
NGO에 대한 지원^{주)}	삭제(특정분야 또는 기타 다부문에 포함)
공여국내 난민 지원	삭제(비배분/비특정에 포함)
비배분/비특정	행정비용, 공여국내 난민지원 포함

주) NGO에 대한 지원은 특정 분야별 분류가 가능한 경우 각 분야 카테고리에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타 다부문' 분야에 배분

나.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¹¹⁾ 및 계수 산정

- 회원국은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을 개정하여 2008년 확정통계 보고시부터 적용
- 다자간 ODA적격으로 추가된 기구 : Latin America Organization for Energy(OLADE), WHO - 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¹²⁾, IAEA - assessed contributions(33%)¹²⁾, OHCHR(64%), UNECE(89%)
- 양자간 ODA적격으로 추가된 기구 : International Civilian Office(ICO) in Kosovo, Regional Co-operation Council for South-East Europe

11) 전체 ODA적격 국제기구 목록은 <http://www.oecd.org/dataoecd/36/16/31724727.pdf> 참고

12) WHO는 기존의 assessed contributions(76%인정) 외에 100% ODA로 인정되는 core voluntary contributions이 추가되었으며, IAEA는 기존에 100% ODA로 인정되는 Technical Cooperation Fund 외에, assessed contribution(33%) 추가

□ ODA 적격 계수 산정

- 회원국들은 WHO-assessed contributions, WHO-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 UNESCO, IAEA-assessed contributions, BSTDB 등의 국제기구에 대하여 계수(coefficients)를 부여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이는 2008 확정통계 보고서부터 적용

ODA 적격 추가 기구 및 계수 변경 기구 내역

국제기구명	카테고리	적격 계수 ^{주)}	비고
Latin America Organization for Energy (OLADE)	기타 다자기구	100%	적격기구 등재
WHO - assessed contributions	기타 UN	76%	계수 변경
WHO - 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	UN 기구	100%	적격기구 등재
UNESCO	기타 UN	44%	계수 변경
IAEA - assessed contributions	기타 UN	33%	적격기구 등재 및 계수 부여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지역개발은행	61%	계수 변경
OHCHR	기타 UN	64%	적격기구 등재 및 계수 부여
UNECE	기타 UN	89%	적격기구 등재 및 계수 부여

주) 적격계수는 다자기구의 ODA 적격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기구의 집행금액 중 동 적격계수와 곱한 금액 만큼만 ODA로 인정

다. ODA 적격 국제기구 선정 기준 마련

- 그동안 건별로 다루어졌던 ODA 적격 국제기구 선정을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문제의식에 따라, 'mandate, activities, budget'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활용한 general methodology에 대해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의
- ODA 적격 금액 산정을 위한 'system of thresholds'와 관련, 회원국은 아래의 사무국 제시안에 합의

사무국 제시안

※ ODA-eligible funding in question이 5천만불 이상 혹은 ODA share가 2천만불 이상인 기관 대상

	Developmental share (D)*
Add agencies to the List	
ODA-eligible in full	D ≥ 90%, provided the remaining <10% is spent on developmental activities in non-ODA countries
Add agencies to the List with a coefficient	
ODA-eligible in part	D ≥ 90%, but the remaining <10% is spent on non-ODA activities OR D between 90% and 5%
Do not add to the List	
Not ODA-eligible	D ≤ 5%
Remove agencies from the List	D ≤ 5%

* Calculated of the funding in question.

1. 5천만불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template 작성을 통해 case-by-case로 가감
 2. 계수(coefficient)는 UN기구, EC, IMF, World bank, WTO, 지역개발은행에 대해서만 적용
 - 검토 대상 기금 규모가 5천만불 이상인 기관은 동 기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개발협력부분(developmental share)이 90% 이상이고, 나머지(10% 이하)가 ODA 비적격 국가 내 ODA 적격 활동(ODA-eligible activities)에 쓰인 경우 100% ODA 적격으로 인정
 - 검토 대상 기금 규모가 5천만불 이하이지만, 실제 ODA에 해당하는 부분 (ODA share)이 2천만불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계수 설정 (덴마크 제안)
- 사무국은 상기 합의한 국제기구 선정방법을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해마다 시범 결과를 회원국에게 보고하기로 함
- 향후 동 방법론에 따른 ODA 적격계수 산정 기준이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라. 기타

수자원·위생 분야코드 분리

- 회원국은 원조 사업에서 위생(sanit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분야에 대한 ODA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현 수자원·위생 분야코드를 각각 분리하여 새로운 분야코드를 만드는 데 동의하였으며, 이는 2010 flows 보고시부터 적용

수자원·위생 분야코드 변경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분야코드	분야	분야코드	분야
14020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14020 ^{주1)}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14021	Water supply - large systems
		14022	Sanitation - large systems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14030 ^{주2)}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14031	Basic drinking water supply
		14032	Basic sanitation

주 : 1) 분야코드 14021 및 14022로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
2) 분야코드 14031 및 14032로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

3. 차기 회의 일정

- 제61차 통계작성반 공식회의 : '10. 6. 9~10 (예정)

붙임 : DAC Table1 개정양식 (Alternative 1안)

작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붙임) DAC Table 1 개정양식 (Alternative 1안)

원조 형태 구분 (Types of Aid)	지출					약정		
	총지출			회수	순 지출	무상	유상	합계
	무상	유상	합계					
공적개발원조 (ODA)								
양자간 원조								
예산지원								
일반예산지원								
분야별예산지원								
Core Contribution 및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NGO, 기타 민간단체, 민관협력 및 연구기관 앞 Core support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공동기금(basket funds/pooled funding)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젝트 사업								
전문가 및 기타 기술협력 (Technical Assistance)								
공여국 인력지원								
기타 기술협력								
공여국내 장학금 및 교육비용								
공여국내 장학금 및 직접연수비용								
공여국내 간접연수생 비용								
채무구제								
행정비용								
기타 공여국내 비용								
개발인식증진								
공여국내 난민 지원								
다자간 원조								
UN기구								
EC								
IDA								
기타 세계은행 그룹(IBRD, IFC, MIGA)								
지역개발은행								
Global Environment Facility (96%)								
몬트리올 협약								
기타 기관								

* OOF 및 PF 부분은 생략

목차보기

ODA 단신 3

ODA 통계담당자 대상 통계 설명회 주요 내용

1. 설명회 개요

□ 개최 배경

- 우리나라는 매년 공적개발원조(ODA) 통계를 집계하여 OECD/DAC에 보고하고 있으며, 정부·공공기관·학계 및 시민사회는 우리나라 ODA 실적을 파악하고 OECD/DAC 회원국들과 비교·평가하는 데 본 통계 활용
- 우리나라 ODA 통계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¹³⁾은 정부의 ODA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ODA 통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OECD/DAC의 관련 지침 및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09년 6월 15일 기관별 ODA 통계 담당자 대상 통계 설명회를 개최
 - 18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참석 (붙임 1)

2. 설명회 주요 내용

가. ODA 통계 실적 입력 방법

- 2008년 ODA 확정통계치 입력시 활용을 위해, ODA 정의 및 적격성여부 판단 기준, 지역별, 분야별, 구속성 여부별 분류기준 설명
 - 참가자들은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의 ODA 적격성 여부, 비구속성 통계 작성 이유 등에 대해 질의
 - 예) UNPKO, 한국어 교육 등의 분야 지원시 ODA 적격성 여부 질의(아래 표 참조)
- ODA 통계보고시스템에서 원조사업별 ODA 자료 입력 방법 소개

13) '95년 주요 관계부처간 협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당시 재정원)가 처음으로 '87~'94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통계를 취합하여 OECD DAC 사무국 앞 보고하였으며, '03년 동 통계가 통계청 지정통계로 고시(통계청 승인 제10202호). 매년 수출입은행이 취합하는 ODA 실적통계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를 거쳐 OECD DAC 앞으로 송부됨

분야별 ODA 적격/부적격 사례

분야	사례	적격성
군사/경찰 지원	인도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군사 및 UN 평화유지군 활동	적격
	광범위한 반테러 활동	부적격
언어	개도국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한국어 사업 (예. 고용과 관련된 사업)	적격
	순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학 교육	부적격
문화	음악기술지원 연수 (예. 방송장비 지원)	적격
	1회성 음악콘서트	부적격
기타	평화를 위한 핵발전소 건설지원 및 핵안전확보 분야	적격
	핵무기 관련 분야	부적격
	ODA 관련 연구 ¹⁴⁾	적격

나. OECD/ DAC 통계 활용방안

- DAC은 IDS online(www.oecd.org/dac/stats/idsonline)을 통해 180여개 원조공여기관(DAC 회원국, 다자기구 및 여타 공여국들)의 ODA 규모, 유형 및 재원 흐름에 관한 데이터 제공
- 동 onlin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전세계의 연도별 ODA 실적, ODA/GNI 비율, 분야별 ODA 지원현황 등 통계자료 도출 방법 소개

3. 시사점

- 2010년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을 앞두고, 본 설명회는 ODA 통계작성기준을 소개하고 정확한 통계입력을 위한 실무적 지침을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원조실행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
- 참석자들은 설명회 내용 중 ODA 적격성 여부, 구속성 원조 개념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구체적 사례제시가 업무 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연례 설명회 개최 필요성에 적극적 공감 표시

14) 연구결과물이 공여국의 원조 정책 수립 등 국내에서 활용 되면 행정비용으로 계상되고, 동 연구로 수원국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기술협력 분야로 분류됨

붙 임 : 18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참석 명단

작 성 : 김 지 은, julliee@koreaexim.go.kr

(붙임) 18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참석 명단

기관명	부서	기관명	부서
강원도청	국제협력실	보건복지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부산광역시청	기업유치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산림청	국제협력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실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전라남도	국제교류계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충청남도청	국제통상과
기상청	국제협력팀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환경부	해외협력과
농림수산식품부	통상협력과	UNESCO 한국위원회	교육팀
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ODA 단신 4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연계에 관한 정책지침서¹⁵⁾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적응 및 지침서 등장 경위

- '02. 11. 제8차 UNFCCC¹⁶⁾ 당사국 총회,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델리선언(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 '05. 12. 제11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¹⁷⁾'은 회원국들에게 적응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목표 및 활동사항 제시
- '06. 4. OECD, 개발협력과정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에 관한 선언¹⁸⁾ 채택
- '09. 4. OECD의 환경정책위원회(EPOC)와 개발협력위원회(DAC)는 '06년 선언에 입각하여 개발협력과정에 기후변화 적응을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책지침서 발간

2. 지침서의 주요 내용

□ 적응의 정의

- **적응(adaptation)**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이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¹⁹⁾

15) Policy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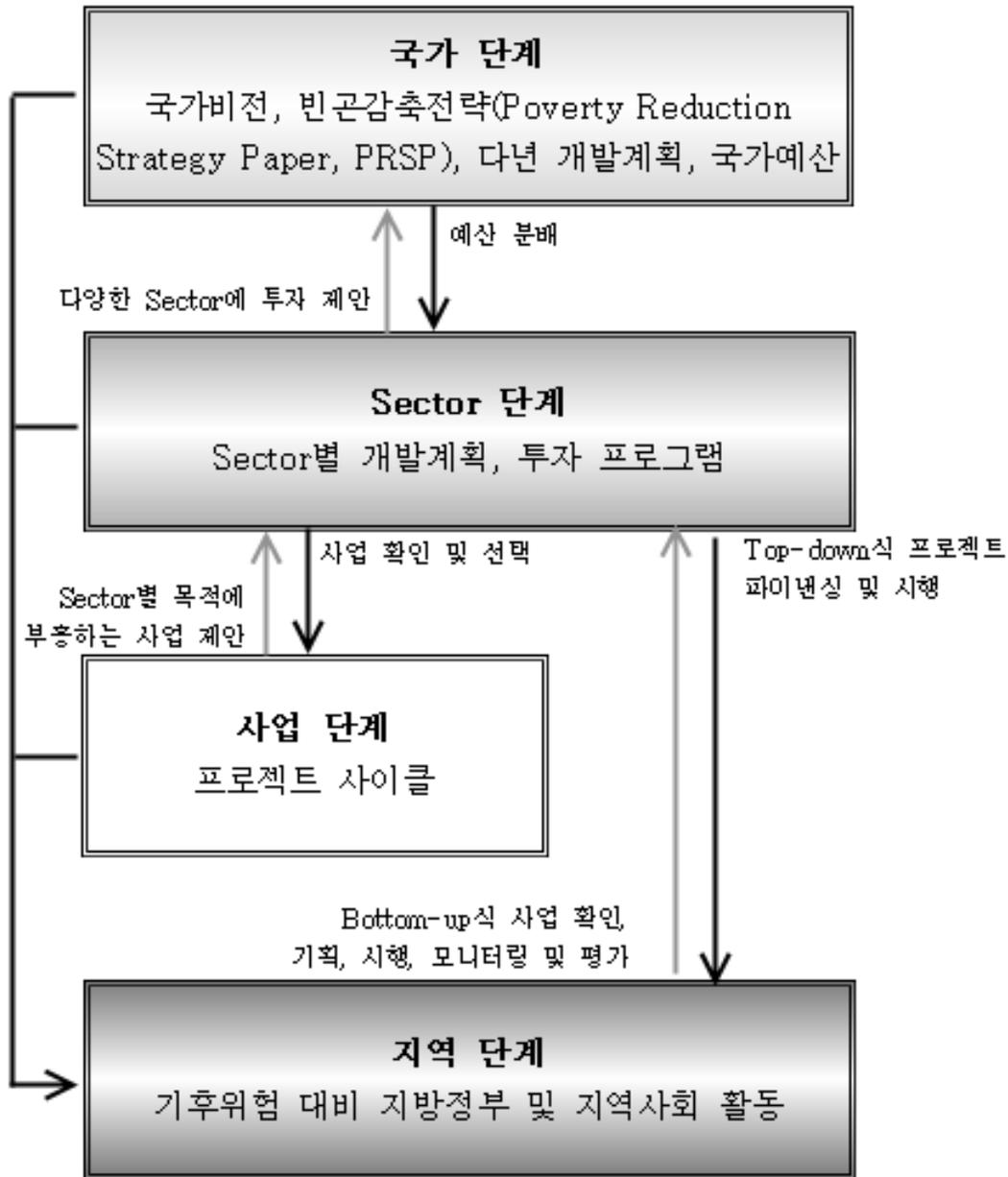
16) UN Framework on Climate Change

17) the Nairobi Work Programme on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ttp://www.wmo.ch/pages/prog/wcp/cca/documents/nwp_en_070523.pdf

18) Declaration on Integrating Climat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19) 한화진. 2005.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I

□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간 연계를 위한 정책결정 단계



□ 정책결정 단계별 특징

○ 국가 단계

- 국가차원에서의 중·장기 개발목표, 빈곤감축전략(PRSP) 등을 설정 하는 단계로 국제환경관련 협약을 이행하고, 재해위험 감축을 위한 기준 메커니즘을 조정하며, 환경관련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단계

- 국가 정책 및 전략 형성에 **climate lens*** 도입

* **Climate lens**란 사업의 방향성이나 우선순위를 제고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 계획 및 실행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전과정을 말하고, 기후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위험, 기존 정책 및 전략 수정시 고려해야 할 기후 요인 등을 검토

○ Sector 단계

- Sector 중에서 농·산·임업, 수자원 관리, 보건, 자연 보전, 에너지, 인프라, 산업생산력²⁰⁾ 등은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
- 유형투자(physical investment)와 관련된 Sector의 경우 투자 결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프로젝트 방향을 수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단계부터 기후관련 조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 사업 단계

- 본 지침서에서 '사업'은 구체적인 목표, 대상, 활동내역, 예산, 모니터링 지표, 한정된 사업기간을 가진 개별활동을 말함
- 사업단계에서는 시범사업 개발 및 기후위험평가 시행,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추진

○ 지역 단계

- 기후변화 영향은 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기후변화 적응 활동 또한 지역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지역 전체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
-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기획할 때 지역정부의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지역 규제 제도 및 지역정부의 의사결정구조를 존중하도록 노력
- 지역 기후위험 관리시, 전략 기획 및 자금 지원 부문은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음

자 료 : Policy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2009.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I, 한화진, 2005.12

작 성 : 김 지 은, julliee@koreaexim.go.kr

목차보기

20) 최근 가나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수력전기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2%까지 하락한 바 있음

ODA 자료 1

세계은행 및 OECD의 2009년도 국가분류 현황

1.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 2009년 7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9년 1인당 GNI를 반영하여 국가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2009년도 국가분류 현황을 발표
- 동 분류는 세계은행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Operational lending categories)'로서 '분석목적을 위한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Analytical classifications)'²¹⁾와는 구분됨
- 세계은행은 변경된 국가분류 기준을 2009년 7월 1일자로 유·무상원조의 지원조건 결정에 적용하기로 함

세계은행의 국가분류기준 변경내용

(단위 : USD)

기존 카테고리	기존 지원조건	2008년	신규 카테고리	변경된 지원조건	2009년
		2007년 1인당 GNI 기준			2008년 1인당 GNI 기준
I	Civil Works Preference ^{주1)}	935 이하	I	Civil Works Preference ^{주1)}	975 이하
II	IDA Eligibility & 20-year IBRD Terms	936~1,095	II	IDA Eligibility	976~1,135
III	IBRD Eligibility (Historic IDA) ^{주2)}	1,096~6,465 (1,096~1,785)	III	IBRD Eligibility (Historic IDA) ^{주2)}	1,136~6,724 (1,136~1,855)
IV	IBRD Graduation	6,275 초과	IV	IBRD Graduation	6,725 초과

주 : 1.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수행되는 토목공사(civil works)의 입찰자 평가에 있어 국내계약자(local contractor)가 토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적격계약자에게 특혜(preference)를 줄 수 있음

2. Historic IDA 적격국은 과거 II그룹에 속했던 IDA 적격국들로 신 국가분류기준상 III 그룹이며, III그룹 안에서 별도 표시됨

21) 세계은행은 분석목적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LICs): 2008년 1인당 GNI USD975 이하],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LMICs): USD976~USD3,855],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UMICs): USD3,856~USD11,905],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ies(HICs): USD11,906 초과] 등 4개 소득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 중

- 2008년도 국가분류기준 변경으로 소속 카테고리가 바뀐 나라는 총 11개국 (붙임 참조)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변경내역

국 가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용토메프린시페, 코트디브아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I	II	4개국
나이지리아, 솔로몬군도	I	III	2개국
카메룬	II	III	1개국
루마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III	IV	4개국

2. OECD의 국가분류

- OECD는 2009년 7월 29일 '공적수출신용협약' 제11조 a)항 및 제33조 a)항에 의거, 상기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근거로 2009년도 국가분류(Country classification)를 발표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체계 비교

세계은행		OECD ^{주)}
1인당 GNI (USD)	카테고리	타이드 원조
975 이하	I	적격
976~1,135	II	
1,136~3,855	III	
3,856~6,725		LMIC
6,725 초과	IV	부적격

주 : OECD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특정 국가의 세계은행 카테고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카테고리를 즉시 반영하지 않고 변경된 카테고리가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만 반영함

- 단, 벨로루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Soft Ban 대상 국가는 1인당 GNI가 3년 연속 타이드 원조 수혜 적격기준(세계은행 카테고리 III 중 LMIC)을 초과한다면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OECD의 국가분류는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원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속성 원조(Tied aid)의 수혜 적격여부 판정과 수출신용의 지원조건(최장상환기간) 결정에 사용됨
 - 구속성 원조 수혜 적격성 판정을 위한 국가분류
 - 적격국가 : 세계은행 하위 중소득국(LMIC) 이하, 즉 세계은행 카테고리 I, II, III(LMIC)에 속하는 국가 → 현재 104개국
 - 부적격국가 : 그 이외의 국가 → 현재 106개국
 - 수출신용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
 - OECD 카테고리 I : 세계은행의 고소득국가 적격기준('06년 \$11,116, '07년 \$11,456, '08년 \$11,906)을 최소 2년 이상 초과한 국가로 최장상환기간은 5년 → 현재 27개국
 - OECD 카테고리 II : OECD 카테고리 I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 최장상환기간은 10년 → 현재 184개국
- 2009년도 OECD의 국가분류 결과,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신규 확정된 나라는 5개국(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난 국가 1개국 포함)이며,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국가는 1개국임
 - 쿠바, 피지, 자메이카, 수리남은 국가분류변경이 2년 연속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07년 \$3,705, '08년 \$3,855)을 초과해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불가리아는 3년 연속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06년 \$3,595, '07년 \$3,705, '08년 \$3,855)을 초과해 Soft Ban 국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알제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나미비아, 페루는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08년 \$3,855)을 초과해, 앞으로 1년 더 현 카테고리를 유지할 경우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벨로루시는 2년 연속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07년 \$3,705, '08년 \$3,855)을 초과해, 앞으로 1년 더 현 카테고리를 유지할 경우 Soft Ban 국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벨리즈는 타이드 원조 적격 기준('08년 \$3,855 이하)에 해당하여, 앞으로 1년 더 현 카테고리를 유지할 경우 타이드 원조 적격국으로 확정됨

- 2008년 독립한 코소보는 타이드 원조 적격 기준('08년 \$3,855 이하)에 해당하지만, 현재 미분류 국가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1년 더 현 카테고리를 유지할 경우 타이드 원조 적격국으로 확정됨

붙 임 : 세계은행의 2009년도 국가분류 현황

자 료 : OECD, 'Country Classification 2009'[TAD/PG(2009)20], 2009.7

작 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붙임)

세계은행의 2009년도 국가분류 현황

카테고리	해당국가 (국가수)				
I (~\$975)	가나	말리	시에라리온	차드	
	감비아	모리타니	아이티	캄보디아	
	기니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케냐	
	기니비사우	미얀마	에리트리아	코모로	
	네팔	방글라데시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베냉	우간다	키르기스	
	라오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라이베리아	부룬디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잠비아	토고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소말리아	짐바브웨		
	II IDA적격 (\$976 ~1,135)	니카라과	시옹토메프린시페*	인도	코르티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레소토	수단	지부티	파키스탄*
III IBRD적격 (\$1,136 ~6,724)	Historic IDA (\$1,136~ 1,855)	가이아나 나이지리아** 몰도바 몽골	볼리비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이집트 카메룬*	
	\$1,855~3,855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과테말라 그루지야 까뽀베르데 동티모르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모로코 몰디브 바누아투 벨리즈 부탄 사모아	스와질랜드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콩고인민공화국 키리바시	
	\$3,856~6,724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그레나다 나미비아 ^o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o 도미니카연방 레바논 마케도니아 ^o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벨로루시 보츠와나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o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알제리 ^o	자메이카 ^o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o 파나마 페루 피지	
IV IBRD졸업 (\$6,725~)	가봉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루마니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적도기니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라우 폴란드	

주 : 1) * 표시는 2008년에 비해 1단계 상향 조정된 국가
 2) ** 표시는 2008년에 비해 2단계 상향 조정된 국가
 3) o 표시는 2008년에 비해 III그룹 내에서 LMIC에서 UMIC로 상향 조정된 국가
 4) ■ 표시는 UN 분류 최빈국임
 5) 슬로바키아는 국가분류 현황에서 제외됨

목차보기

2009년 2/4분기 EDCF 소식

1. 2009년 2/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라오스 GMS 북부 송전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라오스 재무부 (라오스 전력공사)
- 총 사업비용 : 45.3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7.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i) Paklay - Xayabury 간 송전망(122.7km) 구축, 인근 배전간선망구축, 16,114가구와 연결
ii) Namou - Boun Neua 간 송전망(102.4km) 구축, 변전소 신설 및 개폐소 신설, 인근 배전간선망 구축, 2,645가구와 연결

○ 사업개요

- 라오스 정부는 자국의 빈곤퇴치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해 현재 50%에 불과한 전력보급률을 2020년까지 90%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 특히, 고비용의 제한적 전력소비 지역인 북서부지역의 경우 농촌 마을 및 산업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함
- 라오스 북서부 지방(Xayabury州, Phongsaly州 등)의 전력에 대한 접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0년 전력 보급률 90% 달성 목표에 기여하고자,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조유자를 통해 본건 사업 지원 결정(2009년 4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제10구간)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인프라개발투자회사)
- 총 사업비용 : 1,70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0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총연장 105.4km의 전체 10개 구간 중 제 10구간(9.117km) 고속도로 건설(장대교량 1개(1.25km), 횡단고가 2개(0.34km) 포함)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역내 장기 교통망 구축 계획인 '신 GMS(Greater Mekong Subregion) 교통전략('06-'15)'상 9개 광역권 연결도로 사업 중, 동부 광역권 북서쪽 구간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105.4km) 제10구간 (9.1km)을 건설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베트남 교통발전전략 2020(The Strategy on Development of Vietnam's Communication and Transport 202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지역인 하이퐁시는 베트남과 중국 남동부지역과의 경제개발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으로,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09. 4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어, '09. 6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 우즈베키스탄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 총 사업비용 : 16.8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0.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및 부대설비 공급, 교육·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20살 이상 성인 인구의 6%가 허혈성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신생아 중 0.6~0.7%가 선천적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등 심장 관련 질병 발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시설은 수술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통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심장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설비를 확충하고자 추진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06. 3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동 사업의 추진을 우리 정부 앞 요청하고, 우리 정부는 '09. 4월 지원방침 결정 및 '09. 5월 차관공여 계약 체결

□ 파키스탄 GEPCO 지방배전망 확충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파키스탄 경제통계부 (구즈란왈라 전력공사, GEPCO)
- 총 사업비용 : 56.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45.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파키스탄 편잡주 북부 6개 농촌지역에 7개의 132/11kV 소규모 변전소 건립을 위한 기자재 및 관련 용역 구매
- 사업개요
 - 현재 구즈란왈라 전력공사 관할지역의 전력 공급은 1980년대 설립된 이래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부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함
 - 동 사업을 통해 편잡주 북부 농촌 지역에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변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 또한, 기존 변전 설비와의 연계를 통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미소, 제분소 등 농업과 관련된 해당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07. 4월 파키스탄 정부의 차관신청후, '07. 12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09. 5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 캄보디아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 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캄보디아 재무부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 총 사업비용 : 41.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0.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 시엠립강 하천정비
- 사업개요
 -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에 의하면, 2015년 까지 전체 도시의 75%에 하수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나, 2005년 기준 하수시설 보급률은 도시는 55%, 지방은 16.4%에 불과했음. 또한, 본건 승인 당시, 캄보디아 전역에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은 ADB 지원으로 완공된 2건에 불과했으며, 본건 사업이 3번째 하수처리시설 건립 사업으로, 양질의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본건 사업구역인 시엠립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 유적이 위치한 지역으로 1990년대 말 이후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여 관광객 투숙을 위해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가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었음
- '07. 6월 캄보디아와 우리나라간 정책협의를 후보사업목록에 본 사업 포함 되어, '08. 12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고, '09. 6월 차관공여계약 체결됨

□ 스리랑카 Padeniya~Anuradhapura 도로 개선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스리랑카 정부 (스리랑카 도로개발부)
- 총 사업비용 : 70.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55.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스리랑카 중북부지역의 Padeniya ~ Anuradhapura 구간 도로(연장 80.8km)를 2차선 도로로 확장
- 사업 개요
 - 스리랑카 중북부지역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Padeniya ~ Anuradhapura 구간(80.8km) 도로의 성능 개선으로 지역간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7년 5월 스리랑카 정부의 차관지원 신청 및 '08. 8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08. 12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된 사업임
 - Bandaranaike 국제공항으로부터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북부지역과의 여객운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스리랑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

□ 몽골 긴급구난정보망 구축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몽골 재무부 (몽골 법무내무부)
- 총 사업비용 : 16.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3.5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울란바타르시의 치안, 재난, 구급 업무를 통합하는 긴급정보망 구축을 위한 통합지령센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및 통신장비 등 구매, 교육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04. 11월 몽골 '공공안전 및 구급부문 개선을 위한 국가전략 2005-2008' 에 따른 치안, 재난, 구급기관의 시스템 현대화 및 최신식 설비 구매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06. 10월 우리 정부 지원방침 결정
 -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의 급속한 도시집중화로 범죄, 화재 발생 등이 증가하고, 몽골 전체 사건·사고의 약 50%가 울란바타르시에서 발생 하는 등 울란바타르시 치안, 재난, 구급 대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동 사업의 완공시 몽골 정부의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9. 6. 30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6년	3,523	1,361	19,238
2007년	5,542	1,553	21,169
2008년	12,373	2,371	23,060
2009년(6월말)	1,911	860	23,855

* 2009. 6. 30자 환율 (₩1,291.99/US\$)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5개국 203개 사업, 4조 9,976억 원 ('09 : 3개국 3개 사업, 1,911억 원)
- 집행 : 39개국 154개 사업, 2조 963억 원 ('09 : 17개국 33개 사업, 860억 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9. 6)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34,787	69.6%	13,906	66.3%
유 럽	4,105	8.2%	2,807	13.4%
아 프 리 카	6,313	12.6%	2,302	11.0%
중 남 미	2,457	4.9%	1,297	6.2%
중 동	2,141	4.3%	569	2.7%
대 양 주	173	0.3%	82	0.5%
합 계	49,976	100%	20,963	1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15,158	30.3%	6,059	28.9%
통 신	4,923	9.9%	3,346	16.0%
에 너 지	5,735	11.5%	2,184	10.4%
수자원, 위생	8,786	17.6%	2,519	12.0%
환 경 보 호	239	0.5%	148	0.7%
보 건	5,516	11.0%	1,953	9.3%
교 육	3,953	7.9%	1,453	6.9%
공 공 행 정	2,348	4.7%	1,629	7.8%
농 수 입	1,948	3.9%	1,004	4.8%
기 타	1,371	2.7%	668	3.2%
합 계	49,976	100.0%	20,963	100.0%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